

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

□ 주요 변경내용

○ 소아(만 11세 이하) 산정특례 등록기준 완화

- (신규) 최소 치료기간, 투약개시일 이전 약제투여기간 축소, 전신면역억제제 의무 투여기준 삭제 및 Baseline EASI 기준 완화
- (재등록) 전신면역억제제 사용 가능한 일부 소아환자 재등록기준완화

(변경 전) 등록기준	(변경 후) 등록기준
※ 연령 제한 없음. ·(증상) <u>3년 이상</u> 지속 ·(치료기간) <u>국소치료제 4주 이상, 전신면역억제제 3개월 이상</u> 투여 ※ 등록일 <u>6개월</u> 이내 투여 이력 ·(EASI) <u>23 이상</u> ·(재등록) 전신면역억제제 또는 광선치료 <u>매년 6개월 이상</u>	성인·청소년 : 기존 기준과 동일 소아 : 등록기준 완화 ·(증상) <u>1년 이상</u> 지속 ·(치료기간) <u>국소치료제 4주 이상</u> 투여 ※ 등록일 <u>4개월</u> 이내 투여 이력 ·(EASI) <u>21 이상</u> ※ <u>임상사진 제출 필수</u> ·(재등록) 특례기간 중 전신면역억제제 <u>3개월 이상</u> 투여

○ 시행일: 2023. 4. 1.

□ 청소년 및 소아의 산정특례 신규 등록신청 관련 경과규정

○ 경과규정 ('23년 9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 운영)

- (청소년) 급여개시일(2023. 4. 1.) 이전부터 이미 생물학적 제제 또는 JAK 억제제를 투여 중인 청소년 환자의 경우,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'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58호 관련)'을 만족한 경우 산정특례 적용
- (소아) 급여개시일(2023. 4. 1.) 이전부터 이미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 중인 소아 환자의 경우,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'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-58호 관련)'을 만족한 경우 산정특례 적용

□ 업무처리 관련 주요 안내사항

○ 소아 환자의 임상사진 제출

- (등록 대행 시)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원본 및 임상 사진을 자체 보관하고, '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EDI'에서 등록 신청
- (공단 등록 시)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및 임상사진을 공단(지사)에 제출

○ (공통) 전신 면역억제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시

- (Cyclosporine) 신장장애, 간장애, 비조절성 고혈압, 비조절성 감염, 악성 종양 환자 등
- (Methotrexate) 신장장애, 간장애, 혈액질환, 명백한 면역 결핍증 환자 등 국내 허가 사항 중 투여 금기에 해당하는 경우